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 신설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4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 신설	2
※ 참고자료	9
1.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현황	9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이나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공원위원회를 두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등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5명씩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국립공원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신설>	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2.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④ 국립공원위원회의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⑥ 독립공원위원회----- ----- ----- ----- ----- ----한다)의 구성·운영과 그 밖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독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 (이하 “독립공원위원회”라 한다)	

현행	개정안
및 국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에 필요한 사항은----- ----- -----. ----- -----.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은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법은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공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이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

1) 「자연공원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국가 생태계와 경관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인 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및 각종 인허가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나.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다. 그 밖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전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제3항제4호·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현황]2)

(2026.1.현재, 단위: 명)

당연직위원	당연직 민간위원	위촉위원	합계
10*	2	13	25

주*) 당연직 위원 10명 중 2명은 공석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수와 자격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5명씩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운영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결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비교]

	현 행(시행령 제5조)	개 정 안
위원 구성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자세한 위원 구성 현황은 <참고자료.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현황> 참고

	현 행(시행령 제5조)	개 정 안
	다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 ①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재직자 ②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 이 있는 사람 ③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 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사람 포함 ①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②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해 보임.

첫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의 지정과 해체, 구역변경 등과 공 원 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을 결정하는 만큼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이 필요할 것이므로, 위원 기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이 중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전문성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민 권익 제한에 실질 적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로 다양한 관점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고, 유사 위원회에서도 일정한 분야·범위 내에서 구성 위원 수를 특정하지 않고 책임권자가 위촉하고 있으므로³⁾ 수용

3) 기후부는 관련자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 례와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산지위원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건축위원 회 사례 등을 제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하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60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참고자료: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현황 (2026.1월 현재)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당연직	1	금OO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2	이OO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3	강OO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4	천OO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5	김OO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6	김OO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7	윤OO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8	신OO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9	공 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10	공 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당연직 (민간위원)	1	김OO	국립공원공단 경영기획이사
	2	OO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위촉직	1	박OO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 부교수
	2	강O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3	김OO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위원장
	4	강OO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
	5	문OO	경상국립대학교 환경산림과학부 교수
	6	박OO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
	7	정OO	무등산국립공원 평촌 명품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8	이OO	동국대학교 조경정원디자인학부 명예교수
	9	박OO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10	윤OO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
	11	김O	단국대학교 환경원에조경학과 교수
	12	박OO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13	유OO	상지대학교 융합관광기획학과 교수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